감 정 평 가 서

건 명	주식회사 에스디퍼블릭홀딩스 소유물건(2025타경41527)
의 뢰 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류재왕
감정서번호	DS250312-10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성감정평가사사무소

DS250312-1003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성 미 영 (인)

감정평가액	삼십칠억칠천팔백구십사만원정(₩3,778,940,000.-)				
의 뢰 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류재왕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 무 자	-	제 출 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3계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에스디퍼블릭홀딩스 (2025타경41527)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 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등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5.03.25	2025.03.12 ~ 2025.03.25		2025.03.26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4,672 이	토지	1,014 하 여	- 백	3,778,940,000
합 계					₩3,778,94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문 주 완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환지예정지)에 대한 수원지방방법원 평택지원의 법원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개요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기호	정리전의 토지				정리후의 토지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환지위치	감보면적(㎡)	권리면적(㎡)	환지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1	동삭동 182-12	답	104	104	단2-4	3,433.4	688.6	464	-	224.6
2	동삭동 184-25	답	4,568	4,568	단3-1	-	550	550	-	-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03월 25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실지조사기간은 2025년 03월 12일 부터 2025년 03월 25일 까지 이며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조사하고 인근지가수준,가격자료등을 수집분석하였음.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장가치"를 기준가치로 하였으며,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2)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1)본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등은 귀 제시목록 및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등에 의하였음.

2)본건은 평택동삭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내 환지예정지로서 해당 조합의 문의 결과 기준시점 현재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은 교부되었으나 청산절차는 미이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시에는 조합에서 교부된 환지예정지증명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입찰참여시 환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해당조합(평택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031-658-2082)에 문의하여 필히 재확인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본건 토지중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상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작은면적을 면적사정하여 평가하였으며 권리면적이 환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추후 환지면적을 초과하는 권리면적에 대하여 현금청산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부족한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현금청산예정액을 포함하여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이해관계인 등은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대법원 1983.09.26자 결정 83마카33 등)

4)현금청산액은 청산단계에서 해당 조합에서 확정되는바 본건의 경매평가에서의 예정액과 그 차이가 발생하수 있으니 현금청산예정액과 관련해서는 조합에 문의하여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본건 정리후의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합에 문의결과 확인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본건의 면적은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상의 면적을 기준하였으며 추후 환지처분단계에서의 확정측량시 면적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감정평가 근거규정 및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규정

본건의 감정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제9호, 동 규칙 제14조의 규정 및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 기타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근거하였음.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방법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 등이 있음.

나. 토지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방법 개관

①공시지가기준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기타 가치형성상의 제 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②거래사례비교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상의 제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③원가법: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④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2) 본건 토지평가시 적용평가 방법

본건 평가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되, 동 규칙 제12조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 가격결정하였음.

다. 기타

본건 평가시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감정평가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였음.

Ⅲ. 토지가격 산출근거

1.공시지가기준법

1) 비교표준지 선정

가) 선정 사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지리적근접성 등에서 가장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나) 선정 비교표준지 (공시기준일 : 2025.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원/㎡)
A	평택시 동삭동 지구BL-단-6-10	대	437	주거나지	1종일주	중로한면	세장형 평지	1,09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월의 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대상지역	기 간	변동률(%)	비 고	시점수정치
평택시 주거지역	2025.01.01 ~ 2025.02.28	0.282	2025년 02월 누계	1.00435
	2025.02.01 ~ 2025.02.28	0.171	2025년 02월	
누계	2025.01.01 ~ 2025.03.25	0.435	(1+0.00282)×(1+0.00171×25/28)	

3) 지역요인 비교

감정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 동일함.

비교치	1.00

4) 개별요인 비교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비 교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등, 방위,고저, 접면도로상태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및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개별요인 비교치

본건	표준지	비 교 내 역						비 교 치	비고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1	A	0.92	1.00	1.00	1.00	1.00	1.00	0.920	-
2	A	1.03	1.00	1.00	1.00	1.00	1.00	1.030	-

※기호1 토지는 비교표준지A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상태등) 열세함.

※기호2 토지는 비교표준지A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상태등) 우세함.

5)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대법원판례(1998.07.10.선고 98두6067,1993.09.10 선고 92누16300,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1991.12.28) 등에 의거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 또는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가격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해 보정이 필요함.

나) 산식

선례(또는 사례)기준 비교표준지가격/기준시점 당시 비교표준지가격

다) 인근 감정평가선례 선정

① 인근 감정평가선례

기호	목적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감정평가단가 (원/㎡)	비고
a	조세	동삭동 691-1*	1종일주	대	24.10.22	3,220,000	선정
b	시가참고	동삭동 696-1*	1종일주	대	24.04.25	3,110,000	-
c	경매	동삭동 682-2*	1종일주	대	23.03.20	3,170,000	-
d	경매	동삭동 703-*	1종일주	대	24.07.09	3,55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인근실거래가

기호	유형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거래시점	감정평가단가 (원/㎡)	비고
B	매매	동삭동 654-*	1종일주	대	23.09.05	※주1) 3,213,000	배분법적용
C	매매	동삭동 480-*외	1종일주 3종일주	대	23.10.26	3,921,965	평균단가
D	매매	동삭동 42*	1종일주	대	22.04.21	3,463,949	-

※주1토지단가산정내역

①매매금액:1,900,000,000원(2023.09.05)

②건물(연면적:621.61㎡, 사용승인일:2014.09.30)가격 산정내역

1,450,000×(41/50)×621.61≒739,094,290원

③토지(361.3㎡)단가산정내역

위(①-②)/361.3≒3,213,000원/㎡(천원미만절사)

③ 선례선정 및 사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지리적근접성 등에서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평가선례a를 비교선례로 선정함.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① 표준지A

구분	평가선례(a)기준 표준지가격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	비고
가격(원/㎡)	3,220,000	1,092,000	
시점수정	1.00719	1.00435	
지역요인	1.00	-	
개별요인	0.972	-	
산정가격 (원/㎡)	3,152,344	1,096,750	
격차율	2.87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시점수정

대상지역	기 간	변동률(%)	비 고	시점수정치
평택시 주거지역	2024.10.22 ~ 2025.03.25	0.719	지가변동률	1.00719

경기도 평택시 (24.10.22~25.03.25) (주거)
2024.10.01 ~ 2024.10.31 : 0.143 2024.11.01 ~ 2024.11.30 : 0.123 2024.12.01 ~ 2024.12.31 : 0.113
2025.01.01 ~ 2025.02.28 : 0.282 2025.02.01 ~ 2025.02.28 : 0.171

(1 + 0.00143 * 10/31) * (1 + 0.00123) * (1 + 0.00113) * (1 + 0.00282) * (1 + 0.00171 * 25/28) ≒ 1.00719

□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1.08	1.00	1.00	0.90	1.00	1.00	0.972

※비교표준지A는 평가선례a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상태등) 우세하고 획지조건(택지조성의 정도, 성숙도등) 열세함.

마)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의 결정

상기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선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을 참작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표준지	산정요인치	결정요인치
A	2.874	2.87

6) 토지단가 결정

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1,092,000	1.00435	1.00	0.920	2.87	2,895,859	2,900,000	-
2	1,092,000	1.00435	1.00	1.030	2.87	3,242,103	3,24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거래사례비교법

1) 사례 선정

가) 최근거래사례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정보)

기호	유형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거래시점	감정평가단가 (원/㎡)	비고
B	매매	동삭동 654-*	1종일주	대	23.09.05	※주1) 3,213,000	배분법적용
C	매매	동삭동 480-*외	1종일주 3종일주	대	23.10.26	3,921,965	평균단가
D	매매	동삭동 42*	1종일주	대	22.04.21	3,463,949	-

※주1토지단가산정내역

①매매금액:1,900,000,000원(2023.09.05)

②건물(연면적:621.61㎡, 사용승인일:2014.09.30)가격 산정내역

1,450,000×(41/50)×621.61≒739,094,290원

③토지(361.3㎡)단가산정내역

위(①-②)/361.3≒3,213,000원/㎡(천원미만절사)

나) 사례선정 및 이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지리적근접성, 배분법적용의 합리성 등에서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사례B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수집된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당한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본건 선정 비교거래사례는 거래사례의 분포, 인근토지 가격수준, 거래시점 등을 종합고려시 정상적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사정보정치는 1.00을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로 거래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월의 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대상지역	기 간	변동률(%)	비 고	시점수정치
평택시 주거지역	2023.09.05 ~ 2025.03.25	3.818	지가변동률	1.03818

경기도 평택시 (23.09.05~25.03.25) (주거)
2023.09.01 ~ 2023.09.30 : 0.182 2023.10.01 ~ 2023.10.31 : 0.157 2023.11.01 ~ 2023.11.30 : 0.202
2023.12.01 ~ 2023.12.31 : 0.181 2024.01.01 ~ 2024.12.31 : 2.650 2025.01.01 ~ 2025.02.28 : 0.282
2025.02.01 ~ 2025.02.28 : 0.171

(1 + 0.00182 * 26/30) * (1 + 0.00157) * (1 + 0.00202) * (1 + 0.00181) * (1 + 0.02650) * (1 + 0.00282) * (1 + 0.00171 * 25/28) ≒ 1.03818

4) 지역요인 비교

감정평가대상토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 동일함.

비교치	1.00

5) 개별요인 비교

조 건	비 교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등, 방위,고저, 접면도로상태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및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개별요인 비교치

기호	거래사례	비 교 내 역						비 교 치	비고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1	B	0.97	1.00	1.00	0.90	1.00	1.00	**0.873**	-
2	B	1.08	1.00	1.00	0.90	1.00	1.00	**0.972**	-

※기호1 토지는 거래사례B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상태등) 열세하고 획지조건(택지조성의 정도, 성숙등) 열세함.

※기호2 토지는 거래사례B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상태등) 우세하나 획지조건(택지조성의 정도, 성숙도등) 열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기호	사례토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3,213,000	1.00	1.03818	1.00	0.873	2,912,042	**2,910,000**	-
2	3,213,000	1.00	1.03818	1.00	0.972	3,242,274	**3,240,000**	-

Ⅳ. 시산가액의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1.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격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비고
1	2,900,000	2,910,000	단2-4
2	3,240,000	3,240,000	단3-1

2. 시산가액 조정의견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본건 토지감정평가시 최종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감정평가액결정

구분		환지면적 (㎡)	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기호1	464	일괄	1,996,940,000 (부족분포함)	단2-4
	기호2	550	3,240,000	1,782,000,000	단3-1
토지감정평가액결정		**1,087**	-	**₩3,778,940,000**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비고
1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82-12	답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4	464	일괄	1,996,940,000	환지예정지 BL-단2-4 부족분 포함평가 현황 "대"
2	동소	184-25	답	제1종 일반주거지역	4,568	550	3,240,000	1,782,000,000	환지예정지 BL-단3-1 현황 "대"
	합 계							₩3,778,940,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환지예정지) 상태임.
기호2: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환지예정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남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남측으로 중로, 북측으로 소로, 서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에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환지예정지로서 정리후의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합에 문의결과 확인되었음.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6 기타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

광 역 위 치 도

N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82-12외

S = Non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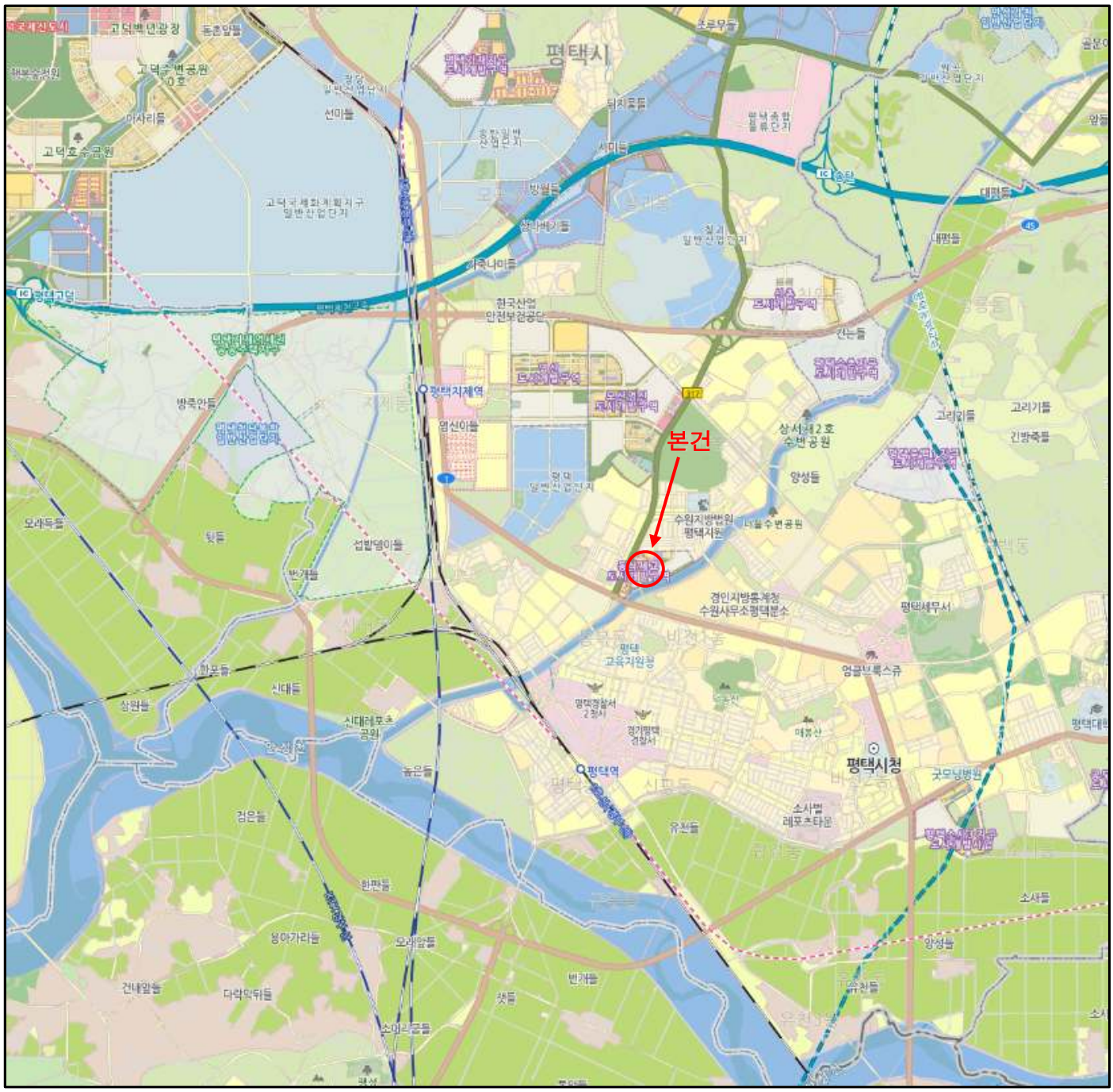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N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82-12외

S = Non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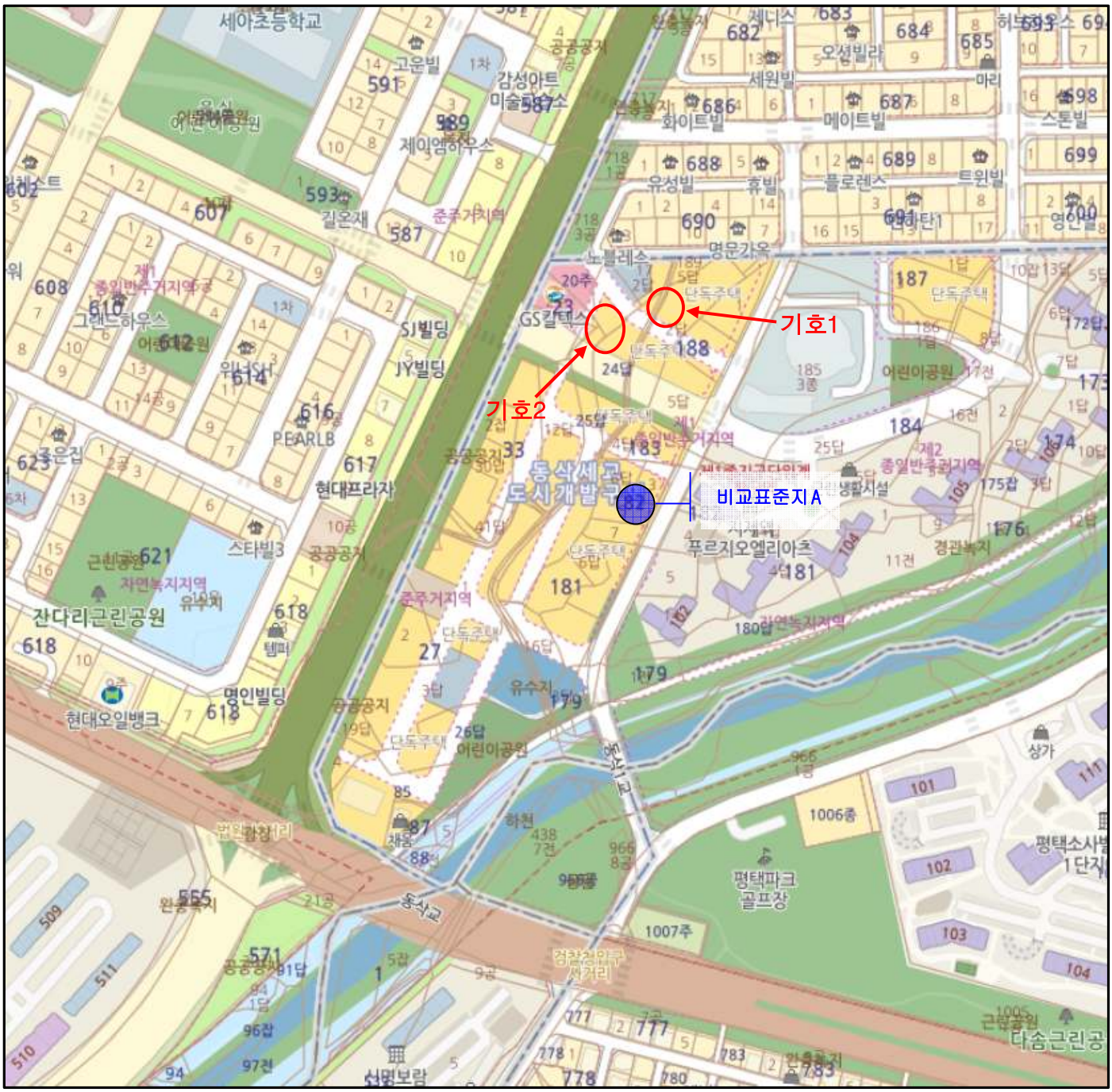

DS250312-1003

지적 및 건물개황도

N

S

S : Non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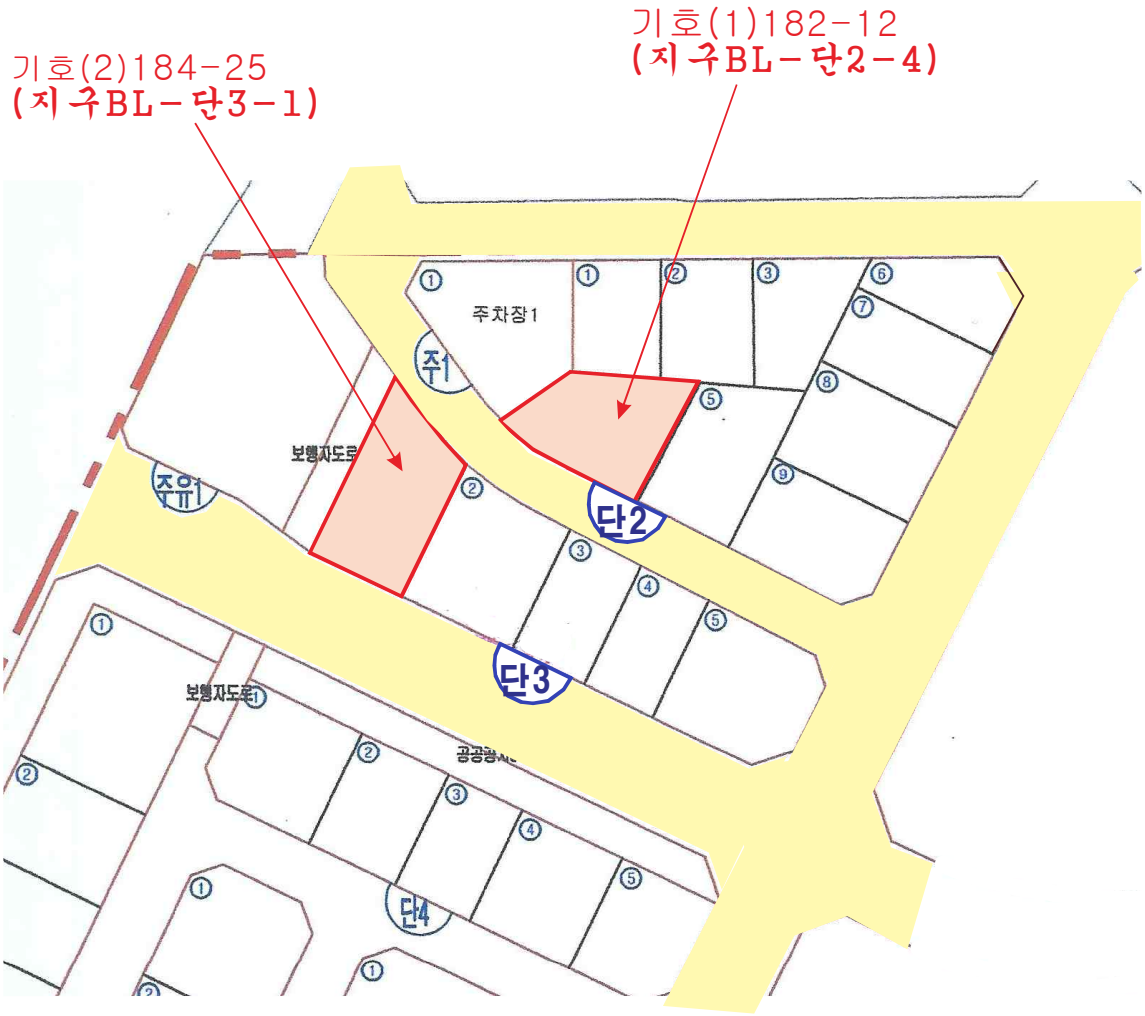

범 례			
	: 평가대상토지	: 평가건물1층	: 평가제외건물(등기)
	: 도로선	: 평가건물2층	: 평가제외건물(미등기)
	: 계획도로선	: 평가건물3층이상	

사 진 용 지

본건 사업지구 전경 (기호1 북서측 인근에서 촬영)

기호1 전경 (남서측 도로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기호1 전경 (남동측 도로에서 촬영)

기호1 전경 (북동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기호1 전경 (북서측에서 촬영)

기호2 전경 (북서측 도로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기호2 전경 (북동측 도로에서 촬영)

기호2 전경 (남서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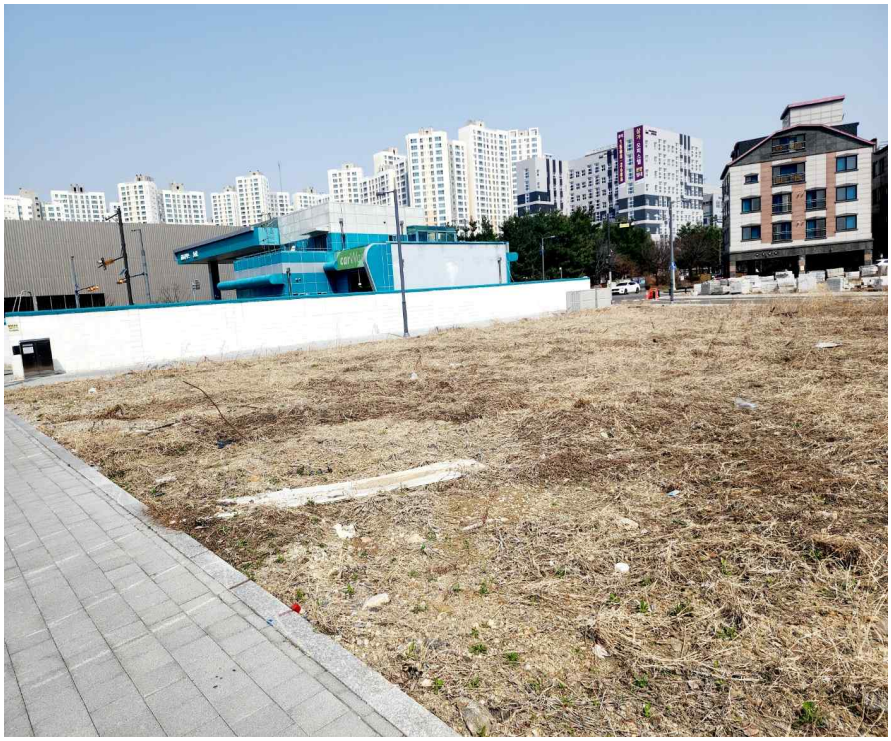

기호2 전경 (남동측에서 촬영)